

# 조세재정 브리프

## 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muyoalkim@kipf.re.kr

- 1 들어가는 말
- 2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기존 논의
- 3 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
- 4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 ▶ 보험세 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위험의 공동부담을 담보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래행위를 보험용역에 대한 소비로 보고 보험료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 유럽연합은 보험용역을 과세대상 소비행위로 보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세 기술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그대로 두면서 보험세를 도입하였음
-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찬반론과 신중론이 존재함
- ▶ 보험용역을 소비행위로 인정하고, 과세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보험세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1 들어가는 말

## ▶ 최근 보험산업이 보험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sup>1)</sup>

- 특히 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가 확대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 손해율이 129.6%(보험료 10,000원에 보험금 지급은 12,960원)에 달하였으며,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케어’가 약 8%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금융감독원이 제한하고 있음
  - ‘문재인 케어’가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률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의료비 부담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소득의 잉여분을 자발적으로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용역에 소비하는 행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비행위에 보험세를 부과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재분배기능)
  - 영국은 2017년 보험세 표준세율을 인상(2011년 6%, 2015년 9.5%, 2016년 10%, 2017년 12%)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국가가 이를 떠맡음으로 인해서 국가의료보험서비스에 3 억파운드의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한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지만, 적절한 세율의 보험세가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은 국가의료보험서비스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2019년 상반기 누적 손해율이 최고 85~103%에 달함
  -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책임보험)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임의가입 대상인 종합보험)은 더 나은 보장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보험용역을 소비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1)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85>, 검색일자: 2019. 9. 5.

2) <https://www.bupa.com/newsroom/news/health-tax-adding-millions-to-nhs-burden>, 검색일자: 2019. 9. 5.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규모는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음

〈표 1〉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분	수입보험료 <sup>1)</sup>	수입보험료	증감률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증감률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증감률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증감률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증감률
손해보험 <sup>2)</sup>	68.9	72.4	5.1	75.4	4.1	88.3	17.1 <sup>3)</sup>	91.0	3.1	110.7	110.7	-2.8	110.7	110.7	-2.8
생명보험	110.5	117.2	6.1	119.8	2.2	113.9	-4.9	110.7	-4.9	110.7	110.7	-2.8	110.7	110.7	-2.8
합계	179.4	189.6	5.7	195.2	3.0	202.2	3.6	201.7	-0.2	201.7	201.7	-0.2	201.7	201.7	-0.2

주: 1) 수입보험료: 연간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총액(국제적으로 보험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3) 2017년부터 수입보험료 산정기준변경으로 2017년 증감률이 대폭 상승한 것이며, 실제 증감률은 3~5% 정도임

자료: 『2016~2018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이자에 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반면에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용역을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음
- 이에 대해 OECD 주요국도 과세기술상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보험세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개별소비세(거래세), 인지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음

▶ 최근 보험산업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용역에 대한 자발적인 소비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른 형태(예, 보험세)로 과세하는 방안도 있음

- 보험세를 통해 세수 확보와 함께 저분위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금융보험을 통틀어서 8천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으며, 물가상승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음<sup>3)</sup>

▶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험세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모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를 살펴봄

- 이 글에서는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기존 논의와 주요국의 보험세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pp.112~113.



## 2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기존 논의

### ▶(찬성론)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면세를 찬성하는 입장

- 보험용역 자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정당성을 논한 경우는 거의 드물며, 주로 금융업에서의 사례를 보험업까지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함
-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로는 이창희(2002)<sup>4)</sup>가 있음
  - 직접금융(예, 증권회사)과 간접금융(예, 은행) 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직접금융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은행, 보험, 증권투자자 같은 금융상품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일부를 면세하고 일부를 과세한다면 경쟁 중립성을 상실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용역의 대가는 이자와 기타 부차적인 서비스 대가와 구분 어려워 기술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함
  - 따라서 세제 내지 세정의 단순화라는 관점에서 금융보험업을 잘게 나누어 세분된 거래유형별로 과세와 면세를 정하기보다는 금융보험업 전체에 대해 면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임

### ▶(반대론)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반대하는 입장

- 특히 홍범교 외(2004)<sup>5)</sup>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premium)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김승래 외(2007)<sup>6)</sup>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베이스, 유효세율 및 세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일반균형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일반평균 1~0 실효세율과 상대가격구조, 세수, 물가 그리고 소득분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금융·보험용역 부문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상대가격 및 물가파급효과는 0.07%로 일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험용역에 관한 과세의 경제적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 외에도 이상엽 외(2015)<sup>7)</sup>는 세제적격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1976년에 보험산업 육성과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배려에서 도입되었음을 지적함

4)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3호, 2002, pp.44-45.

5) 홍범교·안종석·권오성·김유찬·안경봉,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p.161.

6)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p.113.

7)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 p.118

- 2018년 수입보험료기준(추정치)으로 세계 전체보험시장(88개국)에서 우리나라는 7위(1,790억달러)이고, 생명보험시장에서는 8위(980억달러), 손해보험시장에서는 7위(809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였음<sup>8)</sup>
- 따라서 입법 당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보험용역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신중론)박명호 외(2007)<sup>9)</sup>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금융·보험용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개기능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개기능에 대한 대가와 다른 요인에 의한 대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금융·보험용역 전체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중장기적으로 과세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신중론을 취함

### 3 유럽연합의 보험세 제도

▶유럽연합의 보험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보험세 사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보험용역에 대해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에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과세하지 못하며, 대부분이 보험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음
-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영국은 1994년에 최초로 보험세를 도입한 국가이며, 그 뒤를 이어서 독일이 1999년에 보험세를 도입하였음
- OECD의 주요국들도 과다한 면세범위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선진화 및 과세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면세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sup>10)</sup>

▶특히 보험세의 소비세적 성격에서 과세 정당성을 찾는 독일의 사례는 의미가 있음

- 독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소비(지출)에 대한 세금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 물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보험계약자)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아주 드물게 소득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한 직접세로 보는 경향도 있음

8) Swiss Re Institute, sigma, No 3/2019, pp.37, 39, 41.

9) 박명호·홍범교·김승래, 『금융·보험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pp.104~105.

10)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p.5.



- 사고나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세는 부분적으로 특별비용으로서 일종의 지출로 볼 수 있음
- 보험은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서 소득의 일부가 보험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소득세제상 면세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보험료에 대한 보험세는 특별소비세(Aufwandsteuer)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의 영역을 넘어서 국민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잉여소득의 처분으로서 소비의 역할을 함
  - 또한 저분위 소득자의 경우에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중분위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많은 보장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소비에 해당할 수 있음

〈표 2〉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보험세 도입 현황

국가	VAT세율 (표준/경감)	보험용역 VAT 과세 여부	국가별 IPT일반사항		
			IPT 도입 여부	①표준세율/경·증감 ②IPT면세 ③과세표준	
그리스	24%/6%, 13%	비과세	○	①15%/4%(10년 미만 생명보험),20%(화재, 자동차화재) ②10년 이상 생명보험, 재보험, 해상·항공보험 ③보험료	
네덜란드	21%/9%	비과세	○	①21% ②생명·건강·상해 보험, 국제운송, 선박보험, 다른 EU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항공기, 화물, 수출어음, 재보험, 여행보험 ③보험료	
덴마크	25%	비과세	○	①1.1%/34.4%(버스 제3자),42.9%(자동차 제3자) ②생명보험, 재보험, 주택모기지보험, 해상운송손해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등 ③보험료	
독일	19%/7%	비과세	○	①19%/0.3%(자연재해손실),3%(선박), 3.8%(개인사고환급형),22%(화재) ②생명·연금·건강보험, 재보험, 국제운송보험 ③보험료 수입액/보험료수입액60%,85%,86%	
룩셈 부르크	17%/ 3%, 8%, 14%	비과세	○	①4%(화재,가축,자동차 제3자포함) ②생명·연금·장애·저축성 보험 ③보험료	
벨기에	21%/6%, 12%	비과세	○	①9.25%/1.4%(화물운송보험, 택시, 3.5~12톤화물차 등), 2%(개인생명보험), 4.4%(단체사고건강보험) ②신용보험,12톤이상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재보험 ③보험료	
스웨덴	25%/6%, 12%	비과세	○	①32%(자동차보험에만 과세), 45%(스웨덴에 설립된 보험회사와 체결된 단체생명보험) ②기타보험 면세 ③보험료(자동차보험), 보험료의 95%(상기 단체생명보험)	

(표 계속)

국가	VAT세율 (표준/경감)	보험용역 VAT 과세 여부	국가별 IPT일반사항	
			IPT 도입 여부	①표준세율/경·증감 ②IPT면세 ③과세표준
스페인	21%/4%, 10%	비과세	○	①6%(사냥, 화재, 자동차, 의무여행자보험 포함) ②생명·건강·단체연금보험, 저축성보험, 의무사회보험, 국제운송·여객보험, 선박·항공기보험, 보증계약보험, 농업보험, 수출어음보험, 재보험 ③보험료, 보험금액
슬로 베니아	22%/9.5%	비과세	○	①8.5% ②고용주분건강보험, 의무사회보험, 재보험 ③보험료 수입액
슬로 바키아	20%/10%	비과세	○	①8.0%(손해보험) ②자동차 제3자보험(8%특별부과세) ③보험료
에스 토니아	20%/9%	비과세	×	×
아일랜드	23%/ 4.8%, 9%, 13.5%	비과세	○	①1%(생명보험), 5%(손해보험) ②선박·항공기·운송보험 ③보험료
영국	20%/5%	비과세	○	①12%(화재, 개인의료보험 포함)/20%[여행·일부 보증연장, 기계결함(자동차 등의 공급업자 등에 의해서 판매되는 보험)] ②생명·연금보험, 선박·항공기·운송보험, 수출어음, 재보험 ③보험료
오스 트리아	20%/ 10%, 13%	비과세	○	①11%(일부 생명보험, 자동차, 화재 포함)/0.2%(농업), 1%(건강), 4%(생명, 사고) ②국제거래화물·수출어음보험·재보험 ③보험료
이탈리아	22%/ 4%, 5%, 10%	비과세	○	①21.25%(도난 포함)/2.5%(자연재해농작물), 7.5%(해상·항공운송), 12.5%(농업화재, 자동차, 철도·도로운송) ②생명보험, 재보험 ③보험료
체코	21%/ 10%, 15%	비과세	×	×
포르투갈	23%/6%, 13%	비과세	○	※인지세 형태임 ①9%/5%(근로중 사고, 건강, 농업, 화물운송, 선박·항공기, 신용, 보증), 3%(보증계약), 2%(중개) ②생명·연금보험, 재보험 ③보험료

(표 계속)



국가	VAT세율 (표준/경감)	보험용역 VAT 과세 여부	국가별 IPT일반사항		
			IPT 도입 여부	①표준세율/경·증감 ②IPT면세 ③과세표준	
폴란드	23%/5%, 8%	비과세	×	×	
프랑스	20%/ 2.1%,5.5%,10%	비과세	○	①9%(건축, 사냥, 의료책임 포함)/7%(화재감면), 13.4% (법률비용),15%(자동차책임감면)18% (자동차사고손해),19%(해상스포츠투저), 30%(화재표준),33%(자동차책임표준) ②생명·연금보험, 농업피해보험, 선박보험(어선, 상선등), 장기간호보험, 재보험 ③보험료	
핀란드	24%/ 10%, 14%	비과세	○	①24%(화재, 자동차책임, 기타) ②생명·연금보험, 사고·건강보험, 신용보험, 재보험, 국제운송 보험 ③보험료	
헝가리	27%/5%, 18%	비과세	○	①10%(수출어음, 선박, 국제화물운송 포함)/15%(재물손해),23%(자동차제3자) ②생명·건강보험, 농업보험, 재보험 ③보험료	

자료: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 p.99, p.101;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OECD Publishing, 2018, pp. 194~197; Insurance Europe aisbl,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s in Europe," 2019.

## 4 시사점

▶ 보험용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유럽형 소비세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경우에 매입 세액공제처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혼재된 보험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하면서 신세목으로 보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보험용역에 대한 과세 문제를 일찍이 해결한 유럽의 사례는 과세대상의 변천과정이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 그리고 소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 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원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시사 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보험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보험세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과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문헌]

- 김승래 · 구자은 · 김태훈, 『선박여객운송 부가가치세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p.28.
-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p.5, pp.112~113.
- \_\_\_\_\_, 『금융 · 보험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pp.104~105.
- 이상엽 · 박수진 · 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 p.99, p.101, p.118.
-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3호, 2002, pp.44~45.
- 홍범교 · 안종석 · 권오성 · 김유찬 · 안경봉,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p.161.

Insurance Europe aisbl,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s in Europe,” 2019.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OECD Publishing, 2018, pp. 194~197.

Swiss Re Institute, sigma, No 3/2019, p.37, p.39, p.41.

## <웹사이트>

- Bupa, “‘Health tax’ adding millions to NHS financial burden,” <https://www.bupa.com/new-sroom/news/health-tax-adding-millions-to-nhs-burden>, 검색일자: 2019.9.5.
- 대한금융신문, 「보험료 못 올리자 보험영업손실 눈덩이」,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85>, 검색일자: 2019.9.5.

